



환경부



한국환경공단

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기한 안내



석면건축물 소유자(안전관리인)는 **2년** 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합니다. (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)

[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2017.2.28.개정, 2018.1.1.시행]

01

언제까지 측정하여야 하나요?

- 2018년도에 첫 측정을 한 경우, **2020년 12월 31일까지**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. 매 짝수년도 마다 측정하여야 합니다.
→ 단, **2019년도에 신규**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를 제출하고 석면건축물이 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측정 (매 홀수년도 측정), 2020년도에 신규로 제출하고 석면건축물이 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측정 (매 짝수년도 측정)

02

어떻게 측정하나요?

- 석면환경센터, 석면조사기관,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에 의뢰하여 측정합니다.
→ 석면관리종합정보망(<http://asbestos.me.go.kr>) **고객마당** → **자료실**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.

03

측정 후 조치 방법은?

-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측정결과를 **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·보관**합니다.
→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회원가입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.
- 기준치를 초과 한 경우, 교차분석의뢰 및 석면건축자재 제거/보수 등 조치 후 재측정**합니다.
(기준치 미만 나올 때 까지 반복)



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

- 1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다.
- 2 교차분석 결과 기준치 초과시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제거 또는 폐쇄 등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별 조치 방법 "높음"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한다. 조치 한 후
-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재측정한다. 재측정한 결과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①번 부터 다시 조치 하여 기준치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실시한다.

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 "높음" 시 조치방법

-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. 다만,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을 통해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
- 보온재의 경우,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
- 제거가 아닌 폐쇄,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·관리
-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·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

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지점/수

- 시료채취 지점 수, 시료채취 위치는 **세부 측정방법에 따라** 측정하려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, 시설의 이용 빈도 및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합니다.
- 시료채취는 해당시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간 내에 **실제 운영환경에서 실시**합니다.
(※ 황사특보 및 미세먼지 주의·경보 발령 시에는 시료 채취를 실시하지 않습니다.)
- 시료채취위치에 **시료채취기구가 설치된 사진**을 결과보고서에 **첨부**해야합니다.

석면건축물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결정

석면자재면적(m ²)	500 이하	500 초과~1,000 이하	1,000 초과~2,000 이하	2,000 이상
최소 시료채취지점 수	3	4	5	6

※ **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위치**에 대해서는 **전수 측정**을 원칙으로 한다.

※ 실내의 공기는 침기와 환기 절차에 의해 상시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외공기를 동시에 측정해서 실내공기측정값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다. 따라서 필요시에는 대상시설 건축물로부터 최소 1 m 이상 떨어져서 실외공기시료를 채취해야 하며, 시료채취당시의 온도, 습도, 풍속 등 물리적 환경인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.

시료채취위치의 예

대상시설		시료채취위치의 예	비고
공공건축물*		사무실, 복도, 로비 등 주요활동공간	
다중 이용 시설 **	지하역사	승강장, 대합실, 연결통로 등	환승역사의 경우 점포가 있는 연결통로(승강장은 반드시 포함)
	지하도 상가	주 보행공간 등	
	철도역사 · 여객자동차터미널 · 항만시설의 대합실,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	대합실, 승강장 등	승강장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, 대합실만 해당
	도서관	주 열람실, 개방형 서고 등	
	박물관 및 미술관	주 관람 및 전시실 등	
	의료기관	로비, 대기공간 등	
	산후조리원	로비, 대기공간 등	
	노인요양시설	침실, 휴식공간, 식당, 강당, 로비 등	
	어린이집	보육실, 놀이공간, 식당, 로비 등	
	대규모 점포	층별 주요 활용공간	지하층이 있을 경우, 지하층1개 지점 필히 포함
	장례식장	로비 등 주요 활용공간	
	영화상영관	상영관, 대합실 등	
	학원	강의실, 로비 등	
	전시시설	주 관람실 및 전시실 등	
	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영업시설	주요 활동공간	
	실내주차장	층별 주차공간 및 여유공간	지하층이 있을 경우, 지하층1개 지점 필히 포함
기타 건축물 ***	문화 및 집회시설	주요 활용공간	
	의료시설	로비, 대기공간 등	
	노인 및 어린이시설	침실, 휴식공간, 식당, 강당, 로비 등(노인) 보육실, 놀이공간, 식당, 로비 등(어린이)	

*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**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3호 ***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